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7846호, 2006. 1. 11공포·시행),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66호, 2006. 6. 29공포, 2006. 7. 1시행)이 개정·공포되어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종로구 주민이 조례의 제·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40 이상으로 한다.

III. 검토의견

-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주민 청구에 의한 조례 제정 및 개폐제도에 관하여, 종전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2006. 1. 11) 및 시행령(2006. 6. 29)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 필수 조례의 성격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리에 관한 입법이라는 점에 비추어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조례안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조례의 제·개폐 청구)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시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40 이상으로 하였는데, 종전 규정(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 별표 4)에 의하면 20세 이상 주민수가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경우 청구 연서 주민수를 3,300명 이상으로 하였는 바, 이를 2006. 10월 말 현재 우리 구의 인구 기준으로 보면 연서 대상 주민수의 1/40.1 수준에 해당되므로 종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으나, 주민 청구제도의 입법취지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게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2006. 10월 현재 기준)

종 전			개 정 (조 례 안)		
20세 이상	청구인 수	비 율	19세 이상	비 율	청구인 수
132,327명	3,300명 이상	1/40.1 이상	134,365명	1/40 이상	3,360명 이상

- 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인 수를 규정한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주민청구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상위법령에 이미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IV.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第13條의3 (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住民 (「공직선거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選舉權이 없는 者는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3條의4에서 "19歲 이상의 住民"이라 한다)은 시·도 및 제161조의2의 規定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住民數 이상의 連署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사항은 請求對象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地方稅·使用料·手數料·負擔金의 賦課·徵收 또는 減免에 관한 사항
3. 行政機構의 設置·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公共施設의 設置를 반대하는 사항
- ②地方自治團體의 19세 이상의 住民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하는 때에는 請求人의 代表者를 선정하여 이를 請求人名簿에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公表하여야 하며, 請求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請求人名簿 또는 그 寫本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請求人名簿의 署名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第3項의 기간 이내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請求人名簿를 수정하고, 이를 異議申請을 한 者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異議申請을 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없는 경우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異議申請에 대하여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완료된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請求를 受理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를 却下하여 이를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⑧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第1項의 規定에 의한 19세 이상의 住民 總數는 年度別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의하여 조사한 前年度 12月 31日 현재 人口統計에 의한다.

⑩條例의 制定 및 改廢 請求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 (연서 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청구인의 대표자증명 등) ①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안을 덧붙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 (서명요청절차) ①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은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가 있는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6월 이내,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월 이내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요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중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0조의5 (서명 및 청구인명부의 작성) ①청구인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서명을 한 자가 당해 서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당해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6 (청구인명부의 제출) ①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 이상이 된 때에는 제1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의7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10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이를 즉시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제10조의8 (청구요건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의9 (지방의회에의 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8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의15 (공표방법 등) 법 제13조의4제7항, 이 영 제10조의2제2항·제10조의3제2항·제10조의6제2항·제10조의7제7항 및 제10조의13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0조의19 (조례·규칙심의회)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진 행 사 항	연서주민의 수
강 남	제정 (2006. 6. 1)	1/50
강 북	×	
강 서	입법예고 완료	1/50
강 동	×	
광 진	×	
관 악	×	
구 로	입법예고 완료	1/40
금 천	입법예고 완료	1/50
노 원	×	
도 봉	×	
동 대 문	×	
동 작	×	
마 포	×	
송 파	×	
서 대 문	제정 (2006. 9. 29)	1/50
서 초	×	
성 동		
성 북	×	
양 천	제정 (2006. 6. 30)	7,800인 이상
영 등 포	×	
용 산	×	
은 평	×	
중 구	×	
중 랑 구	×	
종 로	정례회 상정	1/40